

# =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 =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3. 14 ----- 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7. 3. 14
- 다. 상 정 일 자 : 제14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('07. 3. 20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조동규 재무과장)

### 가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35조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,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### 나. 주요골자

- 우리구에 여권발급업무가 신설되면 차량을 이용한 구청방문 민원이 급증하여 현재 주차장만으로는 구청주변에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근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건설.
- 취득대상 재산현황

위 치	면 적(m <sup>2</sup> )		소요예산(백만원)	비 고
	토 지	건 물		
계	599.5	795.52	1,169	
당리동 317-20	161.1	192.96	220	
당리동 317-24	226.8	159.77	309	
당리동 317-31	211.6	442.79	640	

## 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35조
- 공유재산 및 물류관리법 제10조, 동법시행령 제7조
-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
- 외교통상부 승인공문 (여권과 - 7596호)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##### ○ 이번 중요재산 취득 승인의 건은

- 2007. 2. 23 외교통상부로부터 승인된 여권접수지방분소 개소에 대비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
- 본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의 합법성, 재산취득의 타당성과 필요성, 재원조달의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한 결과

##### ○ 먼저, 관계법령 부문은

- 지방자치법 제35조①항6호에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①항1호에 보면 중요재산의 범위를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
-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1항에는 년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어 본 건은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, 범위, 방법을 준수하고 있음

##### ○ 다음, 재산취득의 타당성과 필요성 측면에서는

- 현재의 구청사는 1978년에 건립된 건물로 그동안 상주인구와 공무원 수가 계속 증가하고 행정수요도 늘어나 민원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할 뿐만아니라,
- 특히, 주차시설은 주차장법과 부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기준에 크게 미달하여 현재도 주차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바 앞으로 여권접수업무가 시작 되면 주차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장증설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임

##### 《주차장 현황》

기준면수	확보면수	부족면수	확보율
76대	37대	39대	48.7%

※ 설치기준 : 시설면적 100㎡당 1대 (구청사 시설 면적 7,627㎡)

《주차수요 예측》

현재 1일방문차량	여권분소 개소이후 예측	성수기 예측
300여대	480여대	550여대

※예측근거 : 여권업무를 취급하는 사상구, 해운대구 주차수요 참고

○ 다음, 자원조달 측면에서는

- 주차장 부지매입에 필요한 자원 1,169백만원은 전액 교통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음
- 이상과 같이, 본 중요재산취득 승인의 건은 관계법령, 사업의 필요성, 자원조달 측면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 론 요 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